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5. 28 선고 2020나29988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, 피항소인 주식회사 A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온새미로
담당변호사 김성진, 추은혜

피고, 항소인 B
변 론 종 결 2021. 3. 12.
판 결 선 고 2021. 5. 28.
제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4. 28. 선고 2019가단5057165 판결

주 문
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가.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/11 지분에 관하여 2015. 12. 1.
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8,096,885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.

나. 피고는 원고에게 8,096,88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하고,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,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서의 변론의 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.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2. 고쳐 쓰는 부분

제1심판결 제5면 제12행부터 제19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.

『또한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대상 부동산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임대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 또는 같은 법 제8조에 의하여 임대차보증금 중 일정액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이 있는 때에는 수익자가 배상하여야 할 부동산의 가액에서 그 우선변제권 있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금액을 공제하여야 하고(대법원 2007. 7. 26.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),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(대법원 2010. 2. 25. 선고 2007다28819, 28826 판결 등 참조).

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, 원고의 C에 대한 잔존 대출금채권액이 8,096,885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, 사해행위인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그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. 그리고 갑 제9호증의

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은 2016. 1. 18. 기준으로 99,990,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,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의 시가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. 또한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우선변제권 있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액은 30,000,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.

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C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던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C의 상속지분(2/11 지분)의 시가 상당액은 12,725,454원[= (99,990,000원 - 30,000,000원) × 2/11, 원 미만 버림]이고,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C에 대한 위 잔존 대출금채권액은 그에 못 미치므로, 피고가 원고에게 가액배상할 범위도 위 잔존 대출원리금 채권액에 한정된다.』

3. 결론

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,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이성철, 판사 권혁준, 판사 박미선

목록

1. 부산 사하구 L 대 76㎡

2. 부산 사하구 L

[도로명주소] 부산 사하구 M

조표N

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주택

1층 42.24㎡

2층 38.18㎡. 끝.